

공 고

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-251호

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
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·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09호(2008.9.11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97호(2012.07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4-19호(2014.5.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6-32호(2016.4.14.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29호(2016.10.20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 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· 공고합니다.
2.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3월 16일

노 원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

나. 공람장소 : 노원구청(3층) 주택사업과(☎2116-3928)

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3391-3083)

다. 공람의견 제출장소 : 노원구청(3층) 주택사업과(☎2116-3928)

라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사업위치 : 노원구 상계3·4동 85-33일대
- 3) 사업시행면적 : 39,960.6㎡
- 4) 시 행 자 :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5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
- 6) 토지이용계획 (변경없음)

구 분	공동주택	보류지	도 로	공 원	공공청사	계
면적(㎡)	27,362.7	707	9,438.9	1,789	663	39,960.6

7) 건축계획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동수 및 층수	7개동 지하3층 지상28층 (평균 20.94층)	7개동 지하3층 지상28층 (평균 22.99층)	평균층 증가 및 주동 형태 변경
세대수	762	810	+ 48
건폐율	20.57%	20.37%	-0.2%
용적률	254.99%	254.99%	255%이하
연면적	104,100.499㎡	106,835.190㎡	+ 2,734.691
건축면적	5,627.431㎡	5,573.125㎡	- 54.306
주차대수	904대	957대	+ 53대

8) 규모별 세대수

구 분	당 초		변 경		비 고
	평형	세대수	평형	세대수	
임대	34m ²	66	39m ²	67	+ 1 (평형증가)
	40m ²	61	40m ²	68	+ 7
	50m ²	17	50m ²	17	-
	소계	144	소계	152	+ 8
분양	48m ²	20	48m ²	15	- 5
	59m ²	256	59m ²	384	+ 128
	83m ²	327	84m ²	250	- 77
	105m ²	15	104m ²	9	- 6
	소계	618	소계	658	+ 40
합 계		762	144	810	+ 48

9) 부대복리시설 : 근린생활시설, 관리사무소, 경로당, 작은도서관, 주민
공동시설, 보육시설 등

10)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)

마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 주택사업과(2116-3928)에 문의바람.

인 사

蘆 原 區

(發令 第39號)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정 호 진	지방시설서기보시보(토목)에 임함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근무를 명함	신	규

2017.3.13.字

蘆 原 區

(發令 第40號)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남 지 연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휴직기간 : 2017.03.10. ~ 2017.06.30.)	공 룡 1 동	지방행정 주 사 보

2017.3.10.字

蘆 原 區

(發令 第41號)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신 수 지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휴직기간 : 2017.03.11. ~ 2019.09.10.)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	지방행정 주 사 보

2017.3.11.字

蘆 原 區

(發令 第42號)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신 화 경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휴직연장기간 : 2017.03.12. ~ 2018.06.30.)	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	지방행정 주사보

2017.3.12.字